개선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서울)오케이저축은행

2. 조치일 : 2019. 12. 16.

3. 조치내용

조치대상	조치내용
기관	개선사항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개인사업자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등록기준 마련 및 시스템 개선

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제40조의2제1항제4호 및 표준규정 「대출규정」 제121조의2제1항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,

여신실행 이후 개인사업자인 차주 225명*로부터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제출받아 자체 전산시스템(BSP)**에 입력하였으나, 차주 관련정보의 전산 등록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, 동 시스템과 중앙회 통합전산망(IFIS)간 정보 연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휴폐업 정보 등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사실이 있으므로,

* ●●● 등 차주 225명(236건, '19.3말 잔액 2,195억원)
** 매년 계열사인 ○○○○○(주)와 전산업무 위수탁서비스 계약 체결

향후 효율적 여신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(BSP)을 통한 중앙회 통합전산망(IFIS)의 정보입력 및 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차주 관련정보의 구체적인 전산등록기준을 마련하고,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